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병과 대응

01 감염병 관련 위기 대응이 미흡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가 5월 20일 최초 확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6월 10일 현재 사망자 9명, 확진자 108명, 격리자는 3,439명에 달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SARS('02~'03), 조류인플루엔자('03), 신종플루('0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1) 등 대유행 감염병에 대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가 작동되지 못함
- 우리나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령 제285호)」을 근거로 「감염병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 법제도적 체계는 잘 갖춰져 있음
- 그럼에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지휘라인의 역할 부재, 정보공개 지연, 전염병 발병지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조 부족 등 이라는 비판이 존재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임. 39도 이상 고열, 기침, 숨가쁨 등이 대표적 증상임

02 해외 위기 대응 사례

- 선진국의 경우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정보공개와 이동경로 등 전염병 Data Map 작성
 - 미국은 에볼라 발병 시 환자의 실명은 물론 신용카드 내역까지 추적, 저녁식사를 한 레스토랑까지 공개, 홍콩도 사스 발병 당시 환자 발생 지역과 아파트 이름, 동까지 모두 공개
 - 영국의 Dr. John Snow는 1854년 런던에서 발병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의 위치와 콜레라 발병을 지도에 표기하여 그 패턴을 분석하여 전염을 예방
- 미국은 재난관리를 위해 1988년 「스탠포드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주 정부는 주법에서 지방정부는 조례에서 재난관련 사항을 규정
 - 상기 법에 따라 재난 재해 발생 시 일차적 책임기관은 시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

03 시사점

- 위기 상황을 총괄하는 조직, 예를 들면 미국의 Emergency Operation Center(EOC)와 같은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전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자료 축적
 - 위기 상황별수준별 조직구성 및 운영, 지휘체계 등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습하여 즉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임시조직은 해체
- 지역의 위기 상황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권한 확대
 - 질환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판별, 선조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01 주요내용 및 개정 의의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4가지 부문의 개선 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

- 신청 후 20일 이내 발급결정 → 14일 이내로 기한 단축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

-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서식개정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
- 등록사항 변경 시 (현행) 폐업 후 신규 신고 → (개정) 변경 신고로 가능
- 변경신고 기한 없음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토록 규정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지역의 자율성 확대

- 품질평가전담기구의 평가계획, 평가기준 마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허용할 방침

4)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

- 비용청구 및 지급 관련 절차 규정
- 폐지된 교육과정 삭제 등 자격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정비

■ 개정 의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은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그동안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것임. 추후 일관된 정책방향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에 대한 편의증진
 - 복지대상자 선정의 처리기한을 14일로 표준화하고 단축함으로써 시군 담당공무원, 민원인 모두에게 혼선과 부담을 완화
-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의 품질관리 및 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경기도의 지도감독 용이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입법화는 중지되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이며, 우수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하는 방식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경기도와 지원단의 현장지도·감독도 현실성 있는 기준적용을 통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
- 지역의 자율성 확대로 경기도의 사업관리 및 기획역량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지역 단위로 별도의 등록기준이 인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동시에 증대되고 그에 따른 경기도의 사업 기획역량을 키워야 할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20~6.30)

개정내용은 이용자보호, 품질관리, 지역의 자율성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반영하였음

경기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적 사업관리 및 기획역량 요구됨

02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201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

- ‘처우법’ 및 관련 조례에 권고 또는 노력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고 재원 관련 의무 조항을 포함한 조례는 창원시가 유일함

* 지자체별 처우조례 제정 현황

번호	광역시	기초 (A)	제정 (B)	제정 기초자치단체명	제정률 (B/A)
1	서울	25	5	종로, 양천, 성북, 강동, 마포	20%
2	부산	16	8	북, 기장, 해운대, 동, 영도, 중, 사상, 연제	50%
3	대구	8	1	수성	12.5%
4	인천	10	0		0%
5	광주	5	5	동, 서, 남, 북, 광산	100%
6	대전	5	2	서, 중	40%
7	울산	5	2	중, 남	40%
8	세종	-	-	기초 없음	-
9	경기	31	25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평택, 동두천, 안산,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하남, 고양, 파주, 이천, 광주, 양주, 여주, 가평, 안성, 김포	80.7%
10	강원	18	7	양구, 원주, 춘천, 고성, 속초, 정선, 홍천	38.9%
11	충북	11	6	증평, 괴산, 진천, 제천, 단양, 영동	54.6%
12	충남	16	9	서산, 태안, 공주, 아산, 천안, 당진, 홍성, 부여, 논산	56.3%
13	전북	14	8	김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무주, 완주, 남원	57.2%
14	전남	22	5	나주, 광양, 목포, 장성, 순천	22.8%
15	경북	23	8	구미, 안동, 칠곡, 고령, 울진, 문경, 포항, 울릉	34.8%
16	경남	18	8	창원, 거제, 거창, 산청, 김해, 밀양, 통영, 사천	44.5%
17	제주	-	-	기초 없음	-
기초자치단체		227	99	-	43.7%

자료 :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15. 5. 11기준)

2.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구성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현안을 다루기 위한 경기도 민관 협력적 복지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사회복지 직능·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기구인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가 6월 5일 출범

- 공동대표 : 이경학(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은경(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홍갑표(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조승철(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김기호(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 참여단체 : 21개 단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 재가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사회복지시설협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농아인협회

- 향후 경기도형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제안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

광역시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제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99곳이 제정하여 43.7%의 제정률을 보임

경기도사회복지 연대회의 구성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03

FACT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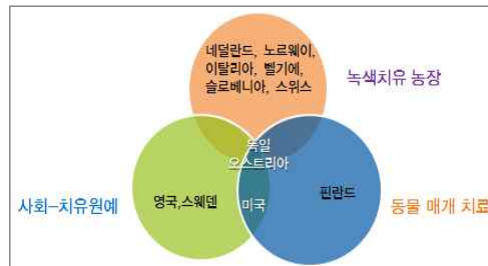
농업과 사회서비스의 만남, 복지분야 6차 산업 가능한가?

- 2000년대 들어 유럽에서는 농업을 활용한 치유농장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6차산업으로 분류하여 농업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유럽 전역에 3,000여개 이상의 치유농장이 있으며,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순

• 사회서비스와 결합된 네덜란드의 치유농장

포도재배(1차), 와인제조(2차), 치매노인 데이케어센터(3차) 운영



유럽의 치유농장 유형(농촌진흥청, 2014)

- 포도농장에서 와인을 생산 및 판매하며 근로가 가능한 치매노인도 생산에 참여
- 데이케어센터는 전담 케어매니저가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
- 시청은 이용신청 및 배정업무를 담당하고 서비스구매계약방식을 통해 비용을 지급

• 경기도는 사회서비스(3차)와 결합된 6차 산업을 발굴 및 육성 필요

- 국내 6차 산업의 예 : 임실치즈마을(1차 농업, 2차 치즈제조, 3차 체험관광)
- 그러나 1,2차에 3차 산업으로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6차 산업은 국내에 없음. 경기도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신규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차 산업 :
1차(농업)+
2차(제조업)+
3차(서비스업)의
결합.
농업 생산물을
제조하고
서비스업(농장
방문, 힐링 등)
까지 수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네덜란드 치유농장>

04

통계로 보는 복지

아동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OECD 국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아동 결핍 지수

네덜란드 94.2	한국 54.8
아이슬란드 90.2	헝가리 31.9
미국 84.2	포르투갈 27.4
독일 83.8	프랑스 10.1
루마니아 76.6	독일 8.8
한국 60.3	아이슬란드 0.9

영역별 아동 삶의 만족도



자료 :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OECD

자료 : 아동의 행복감 국제비교 연구(2015), 세이브더칠드런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물질·사회적 기본조건의 결여수준을 나타내는 결핍지수는 5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최근 발표한 “아동의 행복감 국제비교 연구 결과”는 15개국의 만8세, 10세, 12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조사에서 한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고 보고
- 영역별 조사에서는 자신의 외모, 신체,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최하위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압박감과 높은 스트레스를 보여줌

*OECD 아동의 삶의 만족도 척도 : 아동이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인지하는지 11구간 내에서 측정하는 WHO 척도

* 아동결핍지수 (유니세프 개발) : 하루세끼 섭취, 정기적 취미활동 등 1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한 아동의 수치를 측정